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7.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시험	직렬(직류) 및 직급		선발예정 인원	구 분			비고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경기 남부	220	195	20	5	
		경기 북부	60	53	5	2	
		소계	280	248	25	7	
		사서 9급	5	5	-	-	자격증 소지자
		공업(일반전기) 9급	6	6	-	-	
		공업(일반기계) 9급	3	3	-	-	
		보건 9급	3	3	-	-	
		식품위생 9급	4	4	-	-	
		시설(건축) 9급	21	21	-	-	
		시설(일반토목) 9급	2	2	-	-	
		기록연구(기록관리) 연구사	3	3	-	-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인 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일반전기) 9급	3	3	-	-	특성화고·
		공업(일반기계) 9급	1	1	-	-	마이스터고
		시설(건축) 9급	9	9	-	-	졸업(예정)자
합 계			340	308	25	7	

※ 교육행정 직렬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구분 모집(「거주지제한」 참조)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 배점 비율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라. 필기시험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기록연구사	
시험시간	100분 (10:00~11:40)	140분 (10:00~12:20)	60분 (10:00~11:00)

3. 시험 과목

시험구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비 고
			1차	2차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공업	일반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보건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위생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시설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	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기록연구	기록관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공업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에서 출제

※ 교육행정과 사서 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4. 응시 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나. 응시연령

구분	계급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기록연구사	20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2000년 1~2월생으로 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다. 성별 : 제한 없음

라. 학력·자격증 등 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사서·기록연구 직렬

구분	직렬	직류	학력·자격증 등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사서	사서	1급·2급 정사서, 준사서
	기록 연구	기록 관리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011.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의 선발 예정 직렬 해당(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4년제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붙임 1]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계획'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마.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직렬

-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구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무예정지역	비고
경기 남부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경기 남부	※ 구분 모집 기준일 - 2017. 1. 1. 현재 기준 ※ 전보 제한 - 신규임용 후 3년간 다른 관할지역으로의 전보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출 제한
경기 북부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경기 북부	

※ 거주지제한 적용 예시

-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응시자의 경우
 - 경기 북부로 응시하여야 하며, 경기 남부로는 응시가 불가함
 - 신규임용 후 경기 북부 지역에서 근무하며, 경기 남부 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수원시) 거주자가 최종시험일 전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17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경기 남부)으로만 응시 가능
-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수원시) 거주자가 최종시험일 전에 서울 또는 인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불합격 처리
- ☞ 2017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지 않으나, 그 이전에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경우
 - 응시 불가

- 사서, 공업(일반전기, 일반기계), 보건, 식품위생, 시설(건축, 일반토목), 기록연구 직렬
 -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바.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 2」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사.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5. 시험 일정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제1·2차시험 (필기시험)	2017. 6. 7.(수)	2017. 6. 17.(토)	2017. 7. 21.(금)
제3차시험 (면접시험)	2017. 8. 4.(금)	2017. 8. 12.(토)	2017. 8. 31.(목)

-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음
-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결과조회]에서 불합격자만 확인 가능

6. 필기시험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함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
위탁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어(한문)(10과목)	공개	미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17.(월) 9:00 ~ 4. 21.(금) 18:00까지

나. 취소기간 : 2017. 4. 22.(토) 9:00 ~ 4. 24.(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및 취소 상담시간 : 기간 내 9:00 ~ 18:00 (☎ 031-240-6555)

다. 접수 방법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 →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 접속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 9급 5,000원(결제방법에 따라 소정의 처리비용 소요)

- 납부 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규격 : 가로 3.5cm×세로 4.5cm, 파일크기 100kb 이하, JPG 또는 GIF 파일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표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에서 2017. 6. 7.(수) 10:00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출력 가능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 불가함

-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PC 운영체제 윈도우 7, 8(32bit)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1.0(32bit)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함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기록연구직렬 제외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각 시험단계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은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 적용 가산점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연구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 1. 1. 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2, 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변호사 5%
공업 (일반전기) 9급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5%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3%
식품위생 9급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 영양사, 위 생사 5%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3%
시설 (건축) 9급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5%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 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 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보건 9급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5%
	기능사 :	식품가공	3%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입 상병리사, 의무기 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 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시설 (일반토목) 9급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 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 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5%
	기사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 용토목제도, 측량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9급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5%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5%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 가산대상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온라인채용시스템)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나(자격증소지자)”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위의 “가(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나(자격증소지자)”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사람은 위의 “가(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나(자격증소지자)”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음
-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나.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9시 20분까지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 시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라. 시험장에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스마트시계,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 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위의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가방에 보관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지참) 부정행위자로 처리됨. 따라서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함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아날로그 시계 가능)

마.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 불가

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아.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차.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 사용(연필, 일반 펜, 수정(액) 테이프 등 사용 금지)하여야 하며,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카. 시험 중에는 화장실 이용을 불허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음

타.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 경기 남부, 경기 북부로 구분 모집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다른 관할지역 전보 및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3년간 제한됨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4년간 제한됨

11. 기타 사항

가.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붙임 1] 2017년도 경기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람

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 2]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와 함께 제출

다.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를 통해서 확인 가능

라. 본 시행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에 공고함

마. 업무 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및 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8)으로 문의
-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문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031-240-6555)으로 문의

【붙임 1-4】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술사 등급 제4호·제6호·제7호, 기사 등급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산업기사 등급 제3호·제4호에 따른 응시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에 적용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I.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3.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51호, 2011. 12. 8)는 이 고시 시행일부부터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개정 2012.6.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발취)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관 련 학 과
14 건설	141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 방수산업기사 -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14 건설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15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16 기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17 재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18 화학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20 전기·전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24 농림어업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25 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26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0 전기·전자	201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사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3 방송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14 건설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16 기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17 재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20 전기전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21 정보통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25 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26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직무분야별 학과 (*발취)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 련 학 과
14 건설	141 건축	가구디자인(과,전공,학과), 가구조형(과·전공), 가정관리학과, 가정주거학과, 가족주거학전공, 건물관리과, 건설·건축계열, 건설·응용화학공학계열, 건설·환경·화학공학과군, 건설계열, 건설계열건설전공, 건설계열학과군, 건설공간디자인과, 건설공학(과,과군,학부,전공,계열), 건설공학교육(과·전공), 건설관리계열, 건설관리시스템전공, 건설교통공학(계열,과,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정보과, 건설기계전공, 건설농업기계전공, 건설도시공학(과,부,학부), 건설도시환경공학부, 건설디자인계열, 건설리모델링과, 건설산업과, 건설산업기계전공, 건설시공감리전공, 건설시공전공, 건설시스템(과,공학과,공학부,전공), 건설안전(과,전공), 건설안전시스템과, 건설재료공학과, 건설전공, 건설정보(계열,공학과,공학부,과,전공), 건설정보도시건설과, 건설정보시스템전공,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설지구환경공학부, 건설컨설팅전공, 건설토목과, 건설토목환경공학과, 건설학과, 건설환경(계열,공학과,공학군,공학부,전공,과), 건설환경건설공학부, 건설환경건축공학부, 건설환경설계전공,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공학전공,과,학과), 건설환경정보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건축·토목·환경계열학과군, 건축·토목설계학부, 건축계열, 건축계획전공, 건축공간디자인계열, 건축공학(과·부·전공), 건축공학계열, 건축공학교육과, 건축공학리모델링전공, 건축공학·빌딩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설비공학부, 건축과, 건축기계설비공학(과·전공), 건축도시공학부,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도시토목공학계열,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건축디자인공학(과·전공·부·계열), 건축디자인·CAD전공, 건축리모델링(과,전공), 건축리모델링인테리어과, 건축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건축물관리학과, 건축사회환경공학(과,부), 건축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축산업학(과·전공), 건축생활디자인계열, 건축설계/CAD전공, 건축설계공학(과·전공), 건축설계기술전공, 건축설비(공학과,공학전공,과), 건축설비·기계공학부, 건축설비디자인과, 건축설비설계학(과·전공),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설비소방안전전공, 건축설비시스템공학과, 건축설비자동화과, 건축설비학(과,전공), 건축설비환경과, 건축소방설비(학)(과·부·전공), 건축소방안전과, 건축소방행정학(과·전공), 건축시공(과,전공), 건축시스템공학(과·전공·부·계열), 건축시스템공학부, 건축시스템관리과, 건축실내건축학부, 건축실내디자인(과,전공,학부), 건축·건설시스템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군, 건축·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건축·실내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토목공학교육학과군, 건축·환경디자인학부, 건축내환경학부, 건축엔지니어링전공, 건축인테리어(계열,과,전공,학부),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과, 건축장식과, 건축전기설비과, 건축전기시스템과, 건축조경토목공학부, 건축조경학부, 건축조형계열, 건축조형예술계열, 건축컴퓨터공학과군, 건축토목(계열,공학과군,학부,과), 건축토목도시공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토목환경(공학과군,학부), 건축토목디자인과, 건축학(과·부·전공), 건축화학재료공학계열, 건축환경(과,학과,학부), 건축환경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디자인(과·학과·계열), 건축환경생명공학부, 건축환경설계과, 건축환경설비(과,학과), 건축환경시스템(과,학부), 건축환경토목공학과군, 건축환경화학공학군, 공간관리계열, 공간디자인(학부,전공,학과), 공간리모델링과, 공간사회환경공학부, 공간시스템공학부, 공간연출과, 공간연출디자인(과,전공), 공간예술과, 공간조형디자인전공, 공간조형학부, 공간진단학부, 공간환경(전공,학부), 공간환경디자인전공,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전공), 공연·영상무대디자인(과전·전공), 그린에너지설비(과·전공), 그린인테리어과, 기계건축토목공학부, 기계공학건축학과군, 도시건축공학부,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디지털건축디자인전공, 디지털건축전공, 디지털디자인·건축학과, 디지털인테리어과, 리모델링(과,건축과,인테리어계열), 목조건축인테리어(과·전공), 빌딩설비디자인과, 빌딩설비시스템(과,전공,코스), 산업건축학과, 산업토목(과,학과), 생활경영학과, 생활과학(과·전공·부), 생활과학산업(학)(과·전공), 생활과학산업학(과·전공), 생활디자인(학)(과·전공), 생활복지주거학과, 생활주거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설비(계열·과·전공), 설비디자인(과·전공), 소방건설계열, 소비자아동주거학과, 소비자주거학과, 시각디자인·실내디자인·애니메이션전공, 실내건축(학)(과,전공), 실내건축공학전공, 실내건축디자인(과,학과,전공,계열), 실내공간인테리어과, 실내디자인(학)(과·전공·부), 실내디자인공학과, 실내리모델링인테리어과, 실내인테리어과, 실내인테리어리모델링과, 실내장식과, 실내장식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학)(과,전공), 실용건축과, 아동주거학전공, 웰빙건축학과, 인테리어(학)과, 인테리어·건설계열, 인테리어·건축계열,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인테리어·리모델링전공, 인테리어건축(과,전공), 인테리어건축토목(과,계열), 인테리어건축학전공, 인테리어리모델링(과,전공), 인테리어산업디자인(과,전공), 인테리어재료공학과, 인테리어코디네이션(과,부,전공), 인테리어패션디자인((학)과,전공), 인텔리전트설비계열, 재료환경건축공학(과,과군), 전산응용건축전공, 전통건축학(과,부,전공), 제어계측건축설비공학부, 제품·실내디자인전공, 조명인테리어(학)(과,전공), 주거·가족아동학(과·전공), 주거및실내계획전공, 주거실내디자인학과, 주거·가족복지(과·전공), 주거·가족아동학(과·전공), 주거인테리어디자인학과, 주거학(과·전공), 주거환경(학과,전공), 주거환경디자인전공, 주거환경소비자과, 주생활학(과·전공), 주택(전공,과), 지역건설공학(과,전공), 지역기반공학과(전공), 축조경토목공학부, 친환경건축문화학(과·전공), 컴퓨터건축설계과, 컴퓨터응용건축과,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전공), 테마파크디자인과, 토목·건축·도시정보공학과군, 토목·건축·환경공학부, 토목건설과, 토목건설시스템과, 토목건축공학(과,부), 토목건축측지공학과군, 토목건축환경공학과군, 토목환경건축공학(과,과군), 토탈인테리어전공, 패션디자인·실내환경디자인학과군, 패션디자인주거환경디자인학과군, 한옥문화산업(과·학과·전공), 해양건축공학과, 해양공간건축학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환경건설정보학과</p>
20 전기·전자	201 전기	<p>건축전기설비과, 건축전기시스템과, 고속전기철도과, 광전기공학전공, 광전기제어신소재공학부, 광전자재료전공, 그린산업기술(과·전공), 기계및제어공학과, 기계자동제어공학부, 기계전기계열, 기계전기제어과, 기계제어공학부, 기계제어시스템공학부, 대체에너지개발학(과·전공), 디지털의료정보전기계열, 디지털전기(과·전공·부·계열), 디지털전기</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 련 학 과
		<p>디자인과, 디지털전기정보(과,전공,학부,계열), 디지털전기제어전공, 디지털전기통신과, 디지털정보제어공학(과,전공), 디지털정보제어학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반도체전기자동차공학부, 발명특허공학(과·전공), 발명특허학(과·전공), 산업및전기공학계열, 산업전기공학과, 선박기계·에너지시스템(과·전공), 선박에너지시스템공학(과·전공), 선박전기(과·전공), 승강기메카트로닉스(과·전공), 승강기보수(과·전공), 승강기안전관리(과·전공), 승강기전기설계(과·전공), 신소재전기공학부, 신재생에너지(과·전공), 신재생전기에너지학(과·전공), 아트조명과, 에너지그리드학(과·전공), 열냉동과, 열냉동관리과, 열전기에너지시스템과, 열처리과, 유도무기과, 의료전기전자과, 의용전기전자과, 의전기전자과, 일렉트로닉스패키징, 자동차전기계열, 자동차전기전자(과,전공), 자동화전기과, 전기(학)(과·전공·계열), 전기·전자·컴퓨터공학전공, 전기·반도체·제어공학군, 전기·전자·정보통신·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교육전공, 전기·전자재료·제어공학군, 전기·제어·신소재공학부, 전기·컴퓨터공학부군, 전기계열학과군, 전기계측제어과, 전기공사학과, 전기공학(과,부,전공), 전기공학교육과, 전기광전자공학부, 전기기계공학과, 전기기계제어전공, 전기기술전공, 전기및반도체공학(과,전공), 전기및반도체공학과군, 전기및컴퓨터공학과, 전기방송(과,계열), 전기설비(과,전공), 전기설비자동화전공, 전기소방계열, 전기소방시스템전공, 전기소방안전(과·전공), 전기시스템(과,전공), 전기시스템공학과, 전기시스템디자인과, 전기시스템제어전공, 전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선박시운전(과·전공), 전기·전자계열, 전기·전자공학교육(과,학과군), 전기·전자·전자통신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전공), 전기·컴퓨터제어공학부, 전기에너지공학(과,전공),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전공), 전기자동차과, 전기자동차정보(과,전공), 전기재료공학과, 전기전산계열, 전기전산공학과, 전기전자(과,전공,계열), 전기전자공학과(과,부,전공,군,계열), 전기전자기계과, 전기전자멀티미디어공학부, 전기전자및자동화공학부,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과,부), 전기전자·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자동화정보계열, 전기전자전산(계열,학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전기전자정보(전공,계열), 전기전자정보공학(과,부),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전기전자정보컴퓨터제어계측공학과군,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전공), 전기전자정보통신컴퓨터공학과군,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기전자제어통신공학과군,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부,전공), 전기전자통신(학과·학부·계열), 전기전자통신공학(부,과군), 전기전자학부, 전기정보공학(전공,과군), 전기정보과, 전기정보공학과, 전기정보시스템공학과, 전기정보·전자공학부, 전기정보제어공학부, 전기정보제어과, 전기정보통신계열,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기제어계측공학부, 전기제어공학(과,부,전공), 전기제어과, 전기제어생체공학부, 전기제어시스템공학부, 전기제어시스템과, 전기제어전자정보통신공학과군, 전기컴퓨터공학부, 전기통신공학(과·전공), 전기통신설비과, 전력설비자동화(과,전공), 전력시스템전공, 전자·전기·제어공학전공,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 전자전기공학(과,부,전공), 전자전기정보공학부, 전자전기정보컴퓨터공학부, 전자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전기제어공학과,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전공), 전자전기컴퓨터학부, 전자전기통신공학(부,전공), 전자정보공학(과,부,전공), 전자정보전기공학부, 전</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 련 학 과
		<p>자제어공학(과,부), 전자제어과, 전자제어통신공학부,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과,전공), 전자통신전기공학부, 전파·전기시스템·전자통신공학과군, 정밀계측(과,전공), 정보전자전기공학과군, 정보전자통신계열, 제어(과,전공), 제어계측(과,학과,전공), 제어계측건축설비공학부, 제어계측공학(과·전공), 제어계측시스템(과,전공), 제어기계공학과, 제어시스템공학(과,전공), 제어시스템정보과, 제어자동화공학(과·전공),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전공, 조명인테리어(학)(과,전공), 조선/선박시운전(과·전공), 조선전기제어((학)과, 전공), 철도기술전공, 철도운전기전(과·전공), 철도운전제어학과, 철도전기(과,전공), 철도전기·정보통신학부, 철도전기시스템학(과·전공), 철도전기신호학(과·전공), 철도전기·기관사(과·전공), 철도전기제어과, 철도차량전기과, 컴퓨터응용전기(과,전공,계열), 컴퓨터응용전기시스템과, 컴퓨터응용전기전자과, 컴퓨터응용제어(공학과,과,전공), 컴퓨터전기공학부, 컴퓨터전기시스템과, 컴퓨터전기자동화과, 컴퓨터전기전자계열, 컴퓨터전기전자공학과군, 컴퓨터전기정보학(과·전공), 컴퓨터제어(과,전공),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컴퓨터제어계측공학과, 컴퓨터제어공학(과,전공), 항공전기과, 항공전기제어과, 헬기정비과, 환경화학섬유전기기계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e-CAD(과·전공), IT응용시스템공학(과·전공), SG전기전자제어(과·전공), TV촬영조명과</p>